

* 그제이리엿

총극쌍용

Q~Q1

2page 랐르.

[별표 1]

손해사정 기본 보수표

종 목	손해사정 금액	요 율(%)	기 준 액(원)
제1종 피해물 / 3종 피해물 중 자동차가 아닌 경우	1천만원 미만	기본료	660,000
	1천만원 이상 ~ 2천만원 까지	5.06	1,012,000
	2천만원 이상 ~ 3천만원 까지	4.16	1,254,000
	3천만원 이상 ~ 5천만원 까지	3.74	1,870,000
	5천만원 이상 ~ 1억원 까지	2.88	2,882,000
	1억원 이상 ~ 2억원 까지	2.20	4,400,000
	2억원 이상 ~ 3억원 까지	1.95	5,841,000
	3억원 이상 ~ 5억원 까지	1.61	8,030,000
	5억원 이상 ~ 10억원 까지	1.27	12,650,000
	10억원 이상 ~ 20억원 까지	1.11	22,220,000
	20억원 이상 ~ 30억원 까지	1.02	30,690,000
	30억원 이상 ~ 50억원 까지	0.91	45,650,000
	50억원 이상 ~ 100억원 까지	0.4 가산	
	100억원 초과금액	0.2 가산	

▣ 제1종 피해물과 3종 중 자동차가 아닌 피해물

1. 화재 전손사고의 손해사정기본보수는 위탁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손해액확정금액의 50%를 손해사정금액으로 하여 위 표에 의한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손사고라 함은 손해액 확정금액이 보험가액의 80%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동산에 대하여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* 배상책임을 담보한 보험약관(특별약관 포함)에 대한 손해사정업무 수행시에는 손해액확정금액의 1.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"손해사정금액"으로 정하여 위 표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.
2. 제1종 보험종목사고로서 손해액 100만원이하의 대물배상책임(소액대물) 및 구내 치료비 등 단순현장조사일 경우에 대한 보수는 별표1의 손해사정보수표에 관계없이 기본수수료의 50%범위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.
3. 이 보수표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된 보수가 차하위 구분에 의한 기준액(또는 기본료)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기준액(또는 기본료)을 적용한다.



[별표 2]

리카온특수 손해사정 보수표

제 1종 피해물과 3종 중 자동차가 아닌 특수피해물 전건 포함(vat포함)

종 목	손해사정 금액	기준보수료	할 인
제1종 피해물 / 3종 피해물 중 자동차가 아닌 특수피해물	청구금액 1천만원 미만	손해사정 조정율의 20%, 최저수수료 30만원 수수료최고한도 52만원	별표1 기준액의 20%할인
	청구금액 1천만원 이상~ 2천만원 까지	손해사정 조정율의 20%, 수수료최고한도 70만원	별표1 기준액의 30%할인
	청구금액 2천만원 이상~ 3천만원 까지	손해사정 조정율의 20%, 수수료최고한도 1,00만원	별표1 기준액의 20%할인
	청구금액 3천만원 초과	금융감독원의 기본보수표적용 20%할인 적용 지급	별표1 기준액의 20%할인

* 동계약서는 갑과 을간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3자에게 사본의 제공이나
열람을 금합니다



특수피해물 손해사정 업무위탁 수수료 지급 기준

□ 차량(이륜차, 자전거 포함)

손해사정금액(손해액 확정금액)	수수료(원, VAT포함)	비고
300만원 이하	20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권역외는 교통비 및 통행료 별도 지급 ○ 일비, 숙박비 별도 지급
300만원 초과 ~ 500만원 이하	250,000	
500만원 초과 ~ 800만원 이하	300,000	
800만원 초과 ~ 1,000만원 이하	400,000	
1,000만원 초과 ~ 2,000만원 이하	500,000	
2,000만원 초과 ~ 3,000만원 이하	600,000	
3,000만원 초과 ~ 5,000만원 이하	700,000	
5,000만원 초과	800,000	

□ 차량 외

손해사정금액(손해액 확정금액)	요율(%)	수수료(원, VAT포함)	비고	
1,000만원 미만	고정	300만원 이하	30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권역외는 교통비 및 통행료 별도 지급 ○ 일비, 숙박비 별도 지급
		500만원 이하	400,000	
		1,000만원 이하	500,000	
1,000만원 초과 ~ 2,000만원 이하	5.06	506,000 ~ 1,012,000		
2,000만원 초과 ~ 3,000만원 이하	4.18	836,000 ~ 1,254,000		
3,000만원 초과 ~ 5,000만원 이하	3.74	1,122,000 ~ 1,870,000		
5,000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	2.88	1,440,000 ~ 2,880,000		
1억원 초과	2.20	2,200,000 ~ 별도협약		

□ 여비·교통비 지급기준

구분	지급기준	비고
교통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항공 : 실비(Economy Class) · 철도 : KTX(일반실) · 선임 : 1등 정액 · 버스 및 기타 교통수단 : 실비 · 업무용 승용차 : 유류대 및 통행료(실비, 영수증 첨부) 	국내 손해사정 법인의 지점이 소재하는 지역 (시단위 기준)은 일비만 지급
일비	· 3만원	
숙박비	· 4만원(1일 기준, 출장 편도 200Km 이상시)	

- 기타 상기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사전 협의를 원칙으로 함

